

서울특별시 어르신 전용 「청춘극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66
------	-----

2012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8월 20일

다. 상정결과 :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년 10월 5일 상정·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가. 제안이유

- 『청춘극장』은 고령화시대 어르신 문화 향유 욕구 증가에 맞추어 서울시가 조성한 맞춤형 실버 전용 문화공간으로,
- 영화수급 및 공연기획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법인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함

나.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청춘극장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304-2 메가박스 은평 8층
- 시설규모 : 대지 1,016m², 건물 연면적 701.7m²(8층)
- 준공일자 : 2005. 9.20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만55세 이상 어르신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년 (2013.2.1 ~ 2015.1.31)
- 위탁업무
 - 실버전용극장(은평 메가박스) 시설관리 및 운영
 - 실버극장 프로그램 운영 : 실버영화 및 공연, 이벤트 실시
 - 월~금 : 실버영화(일 4회), 문화강좌, 노래교실, 건강상담 매일 실시
 - 토요일, 공휴일 : 실버영화 상영, 실버공연
 - 분기별 청춘가요제 및 노인복지센터 대상으로하는 찾아가는 청춘극장
 - 상 시 : 실버카페 운영(※부대공간 활용), 무료 팝콘, 음료 제공
 - 공연단 섭외 및 실버운영인력 관리
 - 매점 및 매표소 운영 (※수익금은 정산 후 세외수입 처리)
- 소요예산 : 750,000천원 (2012년),
750,000천원 (201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의 사무내용)3

- 실버전용극장 운영계획(문화정책과-4935, 시장방침 163호, 2010.4.9)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10.10. ~ 2011. 2.(5개월, (주)조이슈즈)
- 2차 : 2011. 3. ~ 2011.12.(10개월, (주)조이슈즈)
- 3차 : 2012. 1. ~ 2013.1.(13개월, (주)조이슈즈)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영화 수급 및 공연기획, (실버)공연단 운영 등 공연예술분야 자격(영화업), 전문지식, 기술을 갖추어 해당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것이 서울시가 직영하는 경우보다 효율적임, 실제로 영화수급 분야는 저작권 확보를 위한 영화계 네트워크가 필요하여 공공분야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움
- 또한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 극장 및 공연단 운영 경험자 중 해당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 및 자격조건을 완비하고 노인채용 의무비율 등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의 사무내용)제3호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기 타

- 실버전용극장 운영계획(문화정책과-4935, 시장방침 163호, 2010.4.9)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동 동의안은 2010년 10월 2일 개관하여 서대문아트홀(구 화양극장)에 운영 중이었던 「청춘극장」이 입주한 건물을 헐고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현재 소재지인 은평구 불광동으로 2011년 12월에 이전하여 운영 중인 바, 해당 극장의 운영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건임.
-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민간위탁 계약을 수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주)조이슈즈로서 그동안은 5개월, 10개월, 13개월의 단기간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었으며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의 민간위탁 기간은 2년임(2013.2.1.~2015. 1.31.).

- (주)조이슈즈는 2011년 11월 24일~26일 「닥터 지바고」 상영 (해당 기간동안 6회 상영)과 관련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수입업자인 “라인트리인터넷엔터테인먼트”로부터 2011년 2월 21일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으나 3월 18일 취하됨. 하지만 라인트리인터넷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용권을 구입한 “다슬기획”(대표: 박상기, 김현주)이 다시 (주)조이슈즈에 대해서 7월 8일 형사소송을 하였으며 이해당사자의 고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9월 26일 불기소 결정됨. 즉 다슬기획이 저작권이 아니라 사용허락을 받은 자에 불과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원 계약서에는 사용권이 단지 35mm 필름영화에 한하므로 DVD를 사용한 (주)조이슈즈의 경우에는 고소인의 사용권이 미치지 않아서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가 아닌 것으로 판정을 받음.

- 하지만 그 이후 11월 2일 다슬기획의 대표자인 박상기가 항고하여 2012년 3월 28일 (주)조이슈즈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바, 이는 「저작권법」 제140조제1호에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 없이 국가가 소추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하지만 (주)조이슈즈는 이러한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년 7월 18일 법원의 1차 재판을 받게 되었음.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가게 된다면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춘극장」 운영 사업자 공모시에 지금까지 해당 사업자로 선정되어 온 (주)조이슈즈를 이러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배제할 것인지가 문제가 됨.

-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처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므로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있기 이전이므로 이번 청춘극장 운영 사업자 공모에서 조이슈즈를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임.

- 실버전용극장인 「청춘극장」 운영사업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이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하지만 향후 운영업체가 이와 같은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을 어르신으로 호칭하는데 이 사업은 55세 이상을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4월에 수립된 실버전용극장 운영계획은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음.

답변: 청춘극장은 순수한 이용시설이므로 젊은 분도 이용이 가능하며 주로 55세 이상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애초 운영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어르신 전용 『청춘극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66
----------	-----

제출년월일 : 2012년 8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청춘극장』은 고령화시대 어르신 문화 향유 욕구 증가에 맞추어 서울시가 조성한 맞춤형 실버 전용 문화공간으로,
- 나. 영화수급 및 공연기획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법인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청춘극장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304-2 메가박스 은평 8층
- 시설규모 : 대지 1,016m², 건물 연면적 701.7m²(8층)
- 준공일자 : 2005. 9.20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만55세 이상 어르신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년 (2013.2.1 ~ 2015.1.31)

○ 위탁업무

- 실버전용극장(은평 메가박스) 시설관리 및 운영
- 실버극장 프로그램 운영 : 실버영화 및 공연, 이벤트 실시
 - 월~금 : 실버영화(일 4회), 문화강좌, 노래교실, 건강상담 매일 실시
 - 토요일, 공휴일 : 실버영화 상영, 실버공연
 - 분기별 청춘가요제 및 노인복지센터 대상으로하는 찾아가는 청춘극장
 - 상 시 : 실버카페 운영(※부대공간 활용), 무료 팝콘, 음료 제공
- 공연단 섭외 및 실버운영인력 관리
- 매점 및 매표소 운영 (※수익금은 정산 후 세외수입 처리)

○ 소요예산 : 750,000천원 (2012년),
750,000천원 (201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의 사무내용)3
- 실버전용극장 운영계획(문화정책과-4935, 시장방침 163호, 2010.4.9)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10.10. ~ 2011. 2.(5개월, (주)조이슈즈)
- 2차 : 2011. 3. ~ 2011.12.(10개월, (주)조이슈즈)
- 3차 : 2012. 1. ~ 2013.1.(13개월, (주)조이슈즈)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영화 수급 및 공연기획, (실버)공연단 운영 등 공연예술분야 자격(영화업), 전문지식, 기술을 갖추어 해당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것이 서울시가 직영하는

경우보다 효율적임, 실제로 영화수급 분야는 저작권 확보를 위한 영화계 네트워크가 필요하여 공공분야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움

- 또한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 극장 및 공연단 운영 경험자 중 해당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 및 자격조건을 완비하고 노인채용 의무비율 등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의 사무내용)3
-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기 타

- 실버전용극장 운영계획(문화정책과-4935, 시장방침 163호, 2010.4.9)